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 간 사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22.1.27)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들은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하위 시행령 및 해설서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관련 내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인 안전경영활동 및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법률의 제정 목적부터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소개하였으며, 법령상 의무내용에 맞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상세히 담아내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 관련 대응절차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장 감독사례와 형사처벌 사례도 소개하여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이 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 12.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 동 근

I. 가이드북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09
2. 가이드북 구성	09
II.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1. 목적	13
2.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근로자수 산정방법	14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18
4.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19
5. “종사자”의 범위 - 원청의 책임범위	23
6. “사업주”의 의미	25
7. “경영책임자등”이 관리하는 대상범위의 확대	26
8. “중대재해”란 : 중대산업재해	28
9.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내용	32
10. 위반 시 벌칙 및 수감명령 등 행정제재	35
11. 징벌적 손해배상	42
1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43
13.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45
III. 사업장 관리방안	
1. 컴플라이언스 구축 필요성	51
2. 사업장 “리스크”진단방법	51
3.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준수를 위한 안전관리 방법	57
IV. 사고발생시 대응 프로세스	
1.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 진행 예상	121
2. 사업장 대응프로세스	121
3. 의무준수 인정 준비자료 리스트	121
V.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127
2. 특별감독 및 형사처벌 사례	129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	134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전문	139

I. 가이드북의 개요



I. 가이드북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010년 이후 가슴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도급 업체 소속의 젊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아르곤 가스질식사고 등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됨

이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를 넓히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되었고, 2021년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벌,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

제·개정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 단계 또는 내년에 시행예정인 관계로 구체적 법 적용 사례 등 실무사례나 관련된 법원의 판례 등이 많이 축적되지는 못한 상황임

관련 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분분하여 실무상 구체적 적용 방식에 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특히 안전 관련 규정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석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재해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거나 사고 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법적 위험이 있음

이에 경총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해설서, 가이드 등을 토대로 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가이드북 구성

본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하려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의 최신자료를 참고하여 경영책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 법 적용 여부, 경영책임자들의 파악, 종사자의 범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벌칙,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 위반에 대한 형사, 행정조치, 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 안전경영 준법체계구축(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진단법
- 경영책임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방법
- 사고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와 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준비자료 리스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특별감독 사례의 유의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 사례
- 경영책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II.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1.1.26일 제정, '22.1.27일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하고 있음을 비추어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처벌의 대상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과 법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부에서는 법의 제정 사유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를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함
- 따라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을 제정 이유로 함
 - 이 법을 통해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2.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근로자수 산정방법

■ 개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의 종류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도 이 법의 적용대상임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은 법에 다른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¹⁾에 따름

제3조(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해설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도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 수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함
 -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대상임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근로자수 = 일정 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 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 미만일 경우 다음에 따른다.

- ①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②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파견근로자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며 (파견법 제35조),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 *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

▶ 사무직 근로자

-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공무원

-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 외국인근로자

-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함
 -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

[참고] 외국인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이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먼저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인 경우는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참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text{같은 기간중에 가동일수}}$$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인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 수의 평균이 5명 이상이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반대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그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22.1.27일 법 시행 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 다만, 법 제6조의 적용에서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4.1.27일부터 적용됨
 - 법인 또는 기관은 '22.1.27일 이후부터 '24.1.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1.27일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1.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 구체적인 사례 판단

- (1) 개인사업주가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 개인사업주가 '22.1.27일 이후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시점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법이 적용됨
- (2) '22.1.27일 이후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
 - 개인사업주는 '24.1.27일부터, 법인 또는 기관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 (3)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 규모가 변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기관이 '22.1.27일 당시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으나, '22.1.27일 이후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 '22.1.27일 당시에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다가 '22.1.27일 이후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 '22.1.27일 당시에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 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고용노동부 해설

▶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참고]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650판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예컨대 사무직과 생산직), 직위(예컨대 고위직과 하위직), 업종(예컨대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 시청료 징수원의 담당업무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 기업체인 피고 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 아울러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임(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1979 판결)

4.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제2조(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사람은 ① 개인사업주, ② 경영책임자등, ③ 공공기관, 지자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은 현장의 행위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체 사업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사업이란 기업을 말하며, 경영책임자는 그 기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자연인을 말함
 -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주로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을 특정하여 “경영책임자등”으로 명시함
- 일반 기업의 경우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음
 - 법령에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것이며, 행정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나 수사기관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 기본적인 법 원리에 따르면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도 이러한 법 원리에 따라서 해석될 것으로 보임
-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자 내지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살펴보면 다음사항이 고려될 것임
 - ① 법인 전체의 조직구조, ② 전결규정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여 ③ 회사 전체 안전보건정책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영사항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대표이사를 특정하여 일부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때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공장장 등 단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반행위자로 보아 제재하였음(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조)

- 실무적으로 기업의 경영 구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이 경영책임자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임

구분	경영책임자등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대표이사
사업부문별로 각자 대표권을 갖고 있는 경우	각 부문별 대표이사

- 기업에 안전보건책임자(CSO)를 별도로 두는 경우,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조적 권한만 가진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도 해석하기도 함
-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개편을 통한 법적 책임의 회피보다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경영책임자등의 판단 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함

고용노동부 해설

▶ ‘경영책임자등’이란,

-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함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함
 -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를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및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또한 경영책임자등과 현장소장, 공장장 등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개별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자는 개념상 구별되어야 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 경영책임자등의 특징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음
-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 개별 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참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함

【적용유형】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및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②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③ 복수의 사업 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다만,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 [개념상의 비교]

① 경영책임자등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vs 사업경영담당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 하나의 사업 ‘장’을 관리 단위로, ②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③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를 의미함
 - 다만,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함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예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법상 사용자에 해당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 사업경영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위는
 -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를 위임받은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

②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vs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란, 그 의무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① 상법상 주식회사 중 ② 상근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라는 회사 내 ‘직위’에 기초한 의무이며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대표집행임원을 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상법상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5. “종사자”의 범위 - 원청의 책임범위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개요

-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장소를 열거하고 이와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확대되었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이 도입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을 특정하는 대신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 범위가 확장됨
 - 다만, 그 적용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보호대상(종사자)은 아래와 같음
 - ① 회사소속 근로자
 - ② 사업장 내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 ③ 기타 용역, 위탁 등의 노무 제공자(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

▶ 종사자의 개념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²⁾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³⁾ 물론이고,
 -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함
-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종사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모든 수급인 및 수급인의 모든 종사자를 포함함

6. “사업주”의 의미

제2조(정의)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해설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과* 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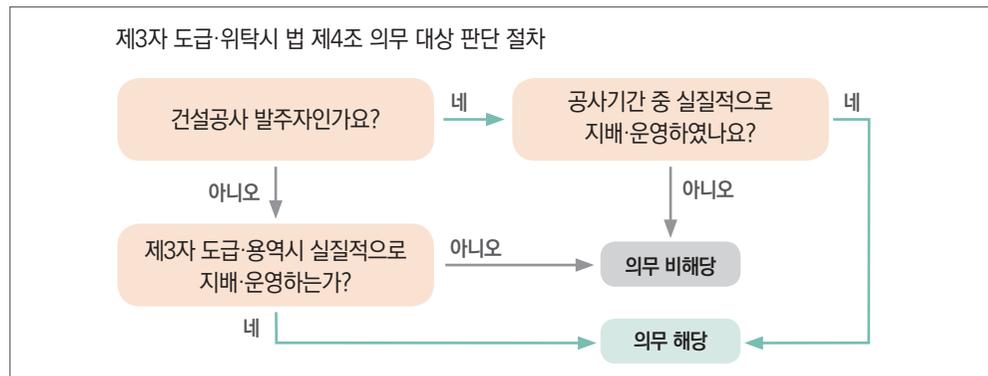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 *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충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경영책임자등”이 관리하는 대상범위의 확대 (도급, 용역, 위탁 등)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개요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내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수급업체 등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및 수급업체 등의 제품 또는 시설 이용자 등의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확장된 도급인의 책임과 유사한 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구체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아직 산업안전보건법상 확장된 도급인의 사업장 개념 역시 명확한 사례가 축적된 것은 아니므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추후 행정해석 및 판례 등을 살펴야 할 것임)
 - ▶ 도급인(※도급, 용역, 위탁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을 맡긴 경우를 지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고용노동부 2020.3.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해설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 의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임
 -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임

▶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8. “중대재해”란 : 중대산업재해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련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주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뿐만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고용노동부 해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 【예시】 화재·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 【예시】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함
-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함
- * 【유해인자 예시】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산화질소 등
- ** 【유해작업 예시】 ▲보건의로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 ① 중금속·유기용제 중독, ②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③ 기온·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 “광의의 직업성 질병”에는 직업적 요인이 개인적 소인(素因)에 부가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방을 위한 최대한 유해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인과관계, 예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기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 시행령은 제2조 별표1에서 ①인과관계의 명확성, ②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③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
 - *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중독,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 24가지 질병

▶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예시】 ① 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②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직업성 질병]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노관 기능 손상, 급성 세노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 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로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애, 갑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9.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내용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 당초 발의된 법률안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를 부여하였으나, 법안 조율과정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는 삭제되고 주로 포괄적 경영관리상의 의무로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가 명시됨. 현장의 직접적인 의무와는 비교적 구분되는 경영관리상 의무에 해당됨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
- 법 제6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임

▶ 보호 대상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방지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 ‘종사자’는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란
 -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사업 운영에 따른 경영상 이익의 귀속 주체를 의미함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 하나의 사업 목적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라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 단계별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다음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사전에 마련하여 검토·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법 제4조제1호, 시행령 제4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목표 및 방침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시행령 제4조제1호)
 -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수가 총 3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시행령 제4조제2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프로세스 구축(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같음 가능)(시행령 제4조제3호)
 - 안전보건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관리(시행령 제4조제4호)
 - 재해예방에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시행령 제4조제5호)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별 1회 이상 평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정해지수 이상 배치. 타법에 배치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르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필요시간 보장(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시행령 제4조제6호)
 - 안전·보건에 대하여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 마련하고 이행하는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종사자의견 청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협의체(법 제64조, 제75조)를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인정(시행령 제4조제7호)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시행령 제4조제8호)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도급, 용역, 위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시행령 제4조제9호)
 - 도급, 용역, 위탁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건설업 및 조선업)
 - 이상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각 이행 관련 자료를 서면 보관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법 제4조제2호), 과거 사고 사례 내지 위험 사례를 통계화하고, 그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법 제4조제3호), 명령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며 그 적절한 이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안전보건 관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조치를 실시(법 제4조제4호, 시행령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점검 자체는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도 허용됨)
 - 확인 결과에 따른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반기별 1회 이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의무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지체없이 그 이행의 조치 (예산의 확보 포함)
- ▶ 이상의 사항에 관한 이행자료는 5년간 서면 보관(시행령 제13조)

※ 구체적인 규정내용 및 이에 따른 관리방안은 다음 장에서 설명

10. 위반 시 벌칙 및 수감명령 등 행정제재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등 하한 규정을 두고,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인에 대하여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는 등 이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강화된 처벌 수위를 더욱 상향하고 있음
 - 다만, 법인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참고] 벌칙 개요

구분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벌금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 법적 성격

-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이라 함)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신분범임
-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함
 -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임

**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항)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 범죄의 구성요건

-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함
-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함
-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과 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③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④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함
 - 한편,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고의를 인정함(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 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의 준법 문화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행정제재로는 ① 교육수강명령과 ②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제도가 도입됨

①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벌칙성 교육수강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는 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그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 이는 의무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중대산업재해를 통해 나타난 모든 위험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대책 수립을 간과하여 동일한 유형의 재해조차 예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 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시간 이내로 규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174조)

- 200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
 -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타법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40시간~80시간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가 시행(20.1.16)된 이후, 아직 해당 조항에 근거한 수강명령 병과사례는 없으나 동 조항 신설 이전 하급심 판결에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여한 바 있음

▶ 교육 내용

-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됨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②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시기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확정하기 전에 여러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분기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 안전보건교육 수강 중 또는 수강 후 다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재해에 대해서는 종전에 수강한 안전보건교육과는 별도로 다른 분기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사항을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 ② 교육일정
 - ③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함

▶ 비용의 부담

- 안전보건교육의 당사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그 밖에 사항

-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함

▶ 미이수시 행정제재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기준으로 함
 - 가중처분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예】 1년 내 종전 2차까지 과태료 부과 시 다음 차수인 3차를 부과

▶ 과태료의 감경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①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이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④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도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대상	•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시기	•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때
방법	• 관보 게재 •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홈페이지 게시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기타	• 공표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 공표기간은 1년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그 위반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 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사실을 공표함으로써,
 - 해당 경영책임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 위협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공표 대상**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요건이므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며*, * (비교) 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 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시행령 제12조 제1항)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 ①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④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
 - 중대재해처벌법과 공표 대상과 내용 등이 상이하고 각 법률에 따른 공표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은 범죄의 형 확정 및 통보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공표

▶ **공표 내용**

-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함
 -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 ② 해당 사업장의 명칭
 - ③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④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⑤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을 포함)
 - ⑥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공표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공표 방법**

-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함

11. 징벌적 손해배상

■ 개요

- 징벌적 손해배상은 새로 도입된 제도로 중대재해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 손해배상액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구체적 손해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손해배상 제기

-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소가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해설

▶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①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 ②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 ③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 ④ 이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정부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중대재해 예방사업의 예시로서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을 규정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 * ①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 ② 산업재해 예방 지원·지도,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④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지원, ⑤ 안전보건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⑥ 안전보건 기술의 연구·개발 등, ⑦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관리, ⑧ 안전보건 관련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노무제공자의 안전·건강 보호 증진
-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및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등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국회에 대한 보고

-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 내용은 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②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임
- 보고 주기와 대상은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시행일

- 법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규정은 공포한 날('21.1.27) 부터 시행 (법 부칙 제1조 제2항)
- *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21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환경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21.7.6), 매 반기별 보고 의무를 이행할 계획임

13.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는 자연인인 행위자를 특정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보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보고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규정 비교

		의무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제38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망라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호 및 ④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표이사 (제14조)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 벌칙에 있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있고 벌금의 액수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게 부과하고 있음
-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음
-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개념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참고]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규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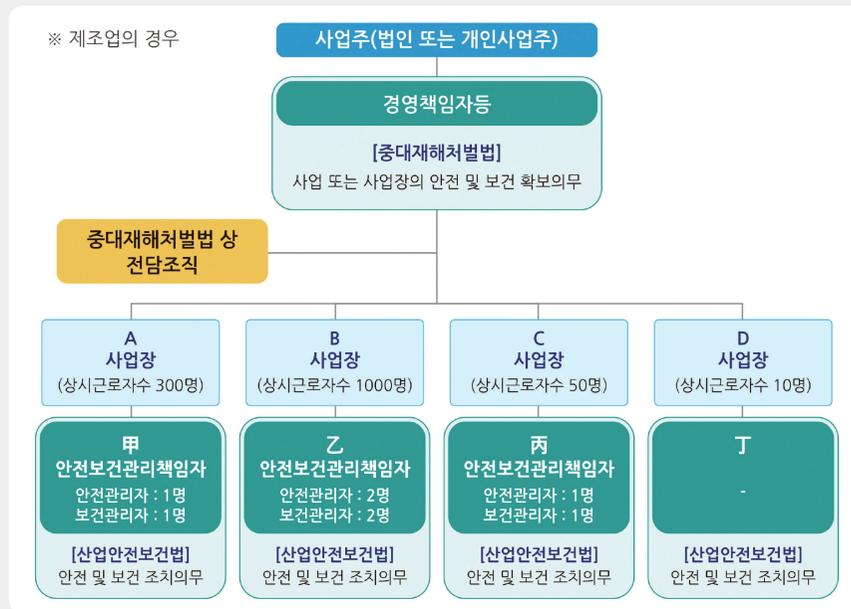
		의무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제63조)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2개 위험 장소를 포함)에서 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부담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5조, 제9조제3항)	도급인의 사업장 작업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수급인 등 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만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을 적용대상으로 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아닌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가능성〉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이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성립함
-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사항은 없지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의견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았거나, 내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경우에 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조, 제39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68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로는 처벌하지 못함
 - 그러나 제38조, 제39조에 규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주, 행위자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보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고용종사근로자 노무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수급인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 재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주 및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책임자등(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Ⅲ. 사업장 관리방안

1. 컴플라이언스 구축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묻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관리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의 준법경영에 대한 이행체계의 구축(컴플라이언스)이 요구됨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은 개별 작업이나 업무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아닌 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통하여 충분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됨

2. 사업장 “리스크” 진단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7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 ①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요구
- ②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선
- ③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발굴
- ④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⑥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
- ⑦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 ①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
- ②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
- ③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참고] 주요 사망사고 원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 지난 3년간('18년~'20년) 산재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1,059건(52.7%),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36.6%), 작업절차 미수립 710건(35.3%),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29.9%)이 주요 원인임
- 작업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시스템비계, 방호기구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조치

- ①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 ②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 ③ 주요 작업현장, 휴게시설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위험한 기계·설비, 장소에 안전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 ④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 ⑤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며, 논의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 ⑥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⑦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을 포상합니다.
- ⑧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⑨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⑩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참고] 안전보건 수준 진단 체크리스트

(출처 :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본사>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오	비고
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2. 공장장, 부사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5.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6. 사업장 내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8.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9. 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제조업(사업장용)〉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오	비고
1. 기계·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2.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 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3. 모든 위험기계·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4. 위험기계·기구 정비 시, 운전을 중단하고 가동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5.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근로자와 공유한다.			
6. 화재·폭발·누출 및 질식 위험장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7.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8.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9. 고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신고·상담 절차를 운영한다.			
10.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다. * 방독·송기마스크, 보안경,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건설업(사업장용)〉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오	비고
1.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2. 정확한 비계 설치 확인, 시스템비계를 활용한다.			
3.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등을 통해 작업 전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주지한다.			
4. 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입고될 경우, 적절한 방호 조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 입고 절차를 두고 있다.			
5.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 기계 사용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중량물취급작업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조립도를 작성하고, 달리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7.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논의 시 수급인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8. 수급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내역서를 관리한다.			
10. 모든 근로자가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참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핵심요소	내용
경영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근로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상조치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3.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준수를 위한 안전관리 방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4조에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경영책임자등은 반드시 법령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에 구체적으로 9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법적 요구사항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일정 규모 이상)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입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개요

- 우선 경영책임자등은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에 비추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가장 핵심 사항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함축적으로 전달해야 함

[안전보건경영방침 사례]

(1) 우리 회사는 안전·환경·건강을 중시한다.

-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안전보건계획과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보건계획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 지침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지속적인 개선과 실행 방향을 의미함

■ 설정 방법

- 기업의 사업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업 내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중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 설정

- 각 사업장은 본사의 안전경영 방침과 목표에 따라 사업장에 적합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모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알림 방법]

회사 홈페이지, 사내 인트라넷, 사내 소식지, 동영상 배포, 문서 시달 이사회 보고자료, ESG 보고서 등

[안전보건 목표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 안전보건 목표와 안전보건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Tip] (고용노동부)

- 협력업체도 회사의 안전경영 방침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도 규모에 맞게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철학을 넘어서서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이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이를 위한 경영방침 수립 등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나 경영방침 수립을 명백히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일정 규모 이상)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역할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

-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 관리)
 - ※ 사업장의 모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업무를 전담조직에서 직접 수행하라는 것은 아님
- 전담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전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함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등 총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전담조직의 인력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전담조직을 하여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다만, 회사 전체로 보아 법적 선임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역)이 총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아도 됨
- 상시근로자수는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으로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례〉



- 이 기업은 사업장A가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두어야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3인(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역의 각1명), 전체 근로자수가 500명으로 안전보건총괄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	포함되지 않는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업 소속 근로자 • 무기 계약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수급인 근로자 • 도급, 위탁, 용역 수행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 ※ 공공행정 및 교육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종사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고용노동부)

■ 전담인력 수 산정방법

- 전담인력의 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규모별 배치기준을 기준으로 함
- 도급인이 수급인을 위하여 대신 선임하였어도 수급인의 전담인력 수는 달라지지 않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나 타법에 따라 실제 선임이 달라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여야 함

[유의사항]

전담인력 수 총 합산은 기업 단위로 함

- 안전보건인력을 계산할 때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행을 하였어도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법상 인력을 기준으로 함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전문인력의 수에 포함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 수급인의 전담조직 설치의무 유무를 결정하는 전문인력의 산정 수 요건에는 포함됨

■ 건설업

-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임
 - 다만,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범위 밖에 있다가 200위 이내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를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까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고용노동부 해설

▶ 전담조직 구성방법

- 전담조직의 최소인원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함
- 구성방법은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기업 단위로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본사에 두어 회사 전체적으로 안전보건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 ※ 전담조직의 의미 : 해당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 해당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므로 총괄 전담조직은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이행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임

[연간 안전보건계획]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총괄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들을 보좌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행상태를 점검, 보고, 개선조치하는 실무조직임
-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원의 자격 및 인원 등은 기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됨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목적

-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기업이 ‘스스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임⁴⁾
-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임
- 기업별 PDCA(계획→실행→확인→개선이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함
-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되도록 관리를 요구하나, 그렇다고 경영책임자등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등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절차를 만들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의무 부과)
- 유해·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절차가 담긴 업무절차를 마련(반드시 내부규정으로 마련)해야 함
 - 업무절차에는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사람, 방법, 순서, 평가 후 개선 등 조치절차, 개선확인절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위험요인 파악 시 준비할 서류]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4) ILO협약 155호(산업안전보건 협약) 제16조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작업장, 설비, 작업공정이 확실히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들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 작업별로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하고 이를 보고받는 경우 의무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임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시점은
 -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시
 - ②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시
 - ③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이며,
- 정기적으로 확인,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절차에 포함될 사항

-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②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포함
- ③ 소속근로자뿐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제기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대상	방법
1단계	기계·기구·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을 파악 •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 •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2단계	화재·폭발·누출위험 화학물질, 건강 위해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 자료 확인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인자로 분류
3단계	작업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파악 • 현장작업자 참여

고용노동부 해설

▶ 유해·위험요인을 통제, 개선하는 절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발굴하고, 작업방식,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에 대해 감독을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물질을 대체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되, 제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거나 개인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하는 모두가 포함됨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절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방법 파악 •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및 관리기준 설정 •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 설정 •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조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행 시 작업중지,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등 방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에게 안전작업절차 주지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예시)

1. 재해 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 떨어짐

- ①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②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④ 통제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간판,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시스템비계* 활용
 - * 규격화된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를 안정적인 구조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⑤ 개인보호구 :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끼임

- ① 위험요인 :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 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참고
- ② 예방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방법·동선 고려
- ④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 등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
- ⑤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목장갑 착용 금지

□ 화재·폭발 재해 예방

- ① 위험요인 :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 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 ② 예방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④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설치
 - (행정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⑤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 질식 재해 예방

- ① 위험요인 :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
 - * 최근 10년 간('11~'20) 밀폐공간 질식 재해자 316명 중 168명 사망(53.2%)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 유해가스: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② 예방방안 :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③ 제거·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④ 통제
 - (공학적)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 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 ⑤ 개인 보호구: 송기마스크 착용

2. 비정형작업 재해 예방

□ 비정형작업

-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된 반복성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처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
- (위험의 특성) ①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②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이나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체, 안전절차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적 특성

□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기법

- ①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
 - * 전기 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자물쇠·결쇠 등

[LOCK-OUT 잠금장치]

기계 등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물쇠·열쇠와 같은 잠금수단에 이용되는 장치



[TAG-OUT 표지판]

표지판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가동하지 않도록 에너지 차단 장치와 기계가 통제되고 있음을 표시하고 차단장치의 잠금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꼬리표와 같은 경고표지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정지→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 재가동

□ 작업허가제

- 고위험 비정형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
- (절차) 안전작업 허가신청(작업자)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3. 화학물질 관리

□ 유해물질 관리

-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은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참고
- 유해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성 및 적정 보호구, 비상 시 대응요령 숙지 필요
- 직업성 암 유발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117조), 대체 불가능한 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요(산안법 제118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은 산업안전보건 제3편 제1장에 따라 사용

사업주는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지원제도 활용 가능

□ 위험물질 관리

-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위험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 대규모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51종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 및 이행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참고
 -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필수 기재
- (기타) 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인자를 제거·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준(제3편*) 준수 필요
 - * 소음진동(제4장), 기압(제5장), 온도습도(제6장), 방사선(제7장), 병원체(제8장), 분진(제9장), 밀폐공간(제10장), 사무실(제11장), 근골격계부담작업(제12장), 기타(제13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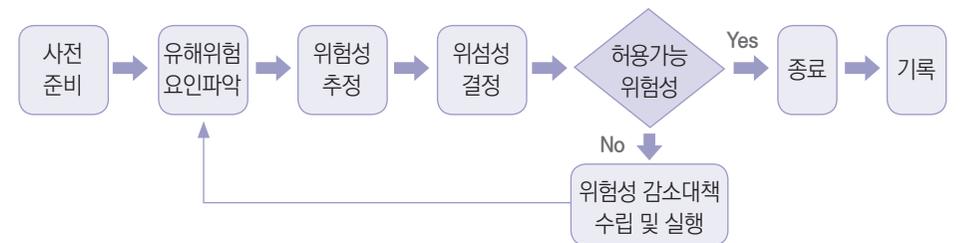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020-53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그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하여야 함
 - 따라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함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개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임
- 실시 주체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절차 :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④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인지 여부의 결정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유형 :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발생시 등)

■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 최초 위험성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 수시 위험성평가 : 다음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사업장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하여는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도급사업시 위험성 평가 실시주체]

-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참고] 건설 및 제조현장의 주요 위험요인

(출처 :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기계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굴착기	붐, 암, 버킷 등의 구조물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와 유압 파이프 등의 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건설기계로 360° 선회가 가능함	굴착 및 적재용 장비로 쓰이며, 별도의 장치부착을 통해 파쇄, 절단작업 등이 가능함	총돌 및 협착, 경사지 전도, 자재낙하 등 순으로 재해 발생 ▶ 최근 5년간 118명 사망 건설기계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이동식 크레인 (기중기)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고 불특정 장소로 이동 가능한 크레인으로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가능한 기계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넘어짐, 떨어짐 등 ▶ 최근 5년간 72명 사망 * 기중기 : 33명 차량탑재형 크레인 : 39명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동력에 의해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장비	고소(高所) 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주기 위함	넘어짐, 떨어짐 등 ▶ 최근 5년간 61명 사망 안전인증·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타워크레인	마스트, 케이지, 턴테이블, 지브 등으로 구성되며, 트롤리의 후크에 양중물을 매달아 현장 내 자재의 수직·수평운반 및 이동을 담당	형태에 따라 T형과 러핑형으로 크게 나뉘며, 건설현장 내 거푸집, 철근 등 각종 자재를 운반	설치·상승·해체 중 붕괴, 취급 중량물 맞음 또는 떨어짐 ▶ 최근 5년간 46명 사망 건설기계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 시 작업 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계	고소(高所) 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주기 위함	떨어짐, 끼임 등 ▶ 최근 5년간 45명 사망 안전인증 방호조치
 덤프트럭	화물자동차의 하나로 차대의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화물 운반(토사, 모래, 자갈 등)에 적합	반경 내 총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43명 사망 건설기계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로우더	기체를 전진시켜 기체 전방에 있는 셔블을 광석이나, 토사 속에 밀어 넣고 퍼올려서 목적지로 이동	굴삭 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을 운반기계로 사용하는 데 사용	반경 내 총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31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항타기·항발기	커다란 해머 따위로 말뚝을 내리치거나 말뚝 위에 해머 따위를 올려놓고 진동시켜서 박음	기초 공사에 쓰이는 기계의 하나로, 말뚝 따위를 땅에 박음	반경 내 총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19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로올러	회전하는 원통형 장비를 사용하여 지면 위를 이동하면서 일정한 압력을 연속적으로 가함	도로공사 등에서 지면을 평평하게 다짐	반경 내 총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16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콘크리트 펌프카	펌프를 통해 유압을 발생시켜 붐대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콘크리트를 타설	콘크리트를 작업 현장으로 압송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15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건설용 리프트	동력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인력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설치·해체 중 붕괴, 추락 등 ▶ 최근 5년간 13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천공기	유압으로 움직이는 힘세고 강한 착암기를 여러 개 장착해 구멍을 만듦	땅이나 암석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7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도저	무한궤도를 돌려서 고르지 않은 곳을 앞쪽에 달려 있는 블레이드를 이용해 땅을 고름	땅을 고르는 작업	반경 내 충돌, 전도 및 협착 등 ▶ 최근 5년간 5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크레셀	조개와 비슷한 형태의 개폐 버킷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굴착	구조물의 기초 및 우물통과 같은 협소한 장소, 연약한 장소를 굴착	전도 및 협착 ▶ 최근 5년간 2명 사망 건설기계 검사 운전원 면허자격



제조현장의 주요 위험기계·기구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지게차	차체 앞에 화물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	화물의 운반 및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부딪힘 또는 깔림 등 ▶ 최근 5년간 151명 사망 방호조치 운전원 면허자격
 크레인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 (호이스트, 갠트리, 차량탑재형 크레인, 천장주행 크레인)	조선, 기계 등의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함	취급 중량물 맞음 또는 떨어짐 ▶ 최근 5년간 98명 사망 * 차량탑재형 크레인 : 39명 천장·갠트리 크레인 : 59명 안전인증 안전검사
 컨베이어	재료나 화물을 일정한 거리 사이를 두고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 (벨트, 체인, 롤러, 스크류)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함	구동부 등 끼임 ▶ 최근 5년간 55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 시 작업 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기계	고소(高所) 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 주기 위함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 ▶ 최근 5년간 45명 사망 안전인증 방호조치
 리프트	동력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산업용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운반구와 구조물 등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37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	지그 또는 로봇팔 등 끼임 ▶ 최근 5년간 16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압력용기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화학공정(반응, 열교환 등) 또는 압력을 요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	과압으로 인한 파편 맞음 등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공작기계	절삭구를 사용하여 금속 및 기타의 재료를 가공하여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기계 (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기)	재료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으로 원하는 치수형상으로 만들기 위함	작업복, 목장갑 등 말림 또는 가공물 등 맞음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사출성형기	열을 가하여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	자동차용 부품, 가전제품, 휴대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의 형상을 성형하기 위함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2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기 위함	회전날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1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프레스	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에 외력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함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0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파쇄기·분쇄기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작은 덩어리로 부수기 위함	파쇄날·분쇄날 끼임 ▶ 최근 5년간 7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금속절단기	동력으로 작동되는 톱날을 이용하여 냉간금속을 절단하는 기계	냉간금속을 절단하기 위함	감전 또는 절단기 등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방호조치
 식품가공용기계	채소, 육류, 어류, 곡물 등 식품을 가공하는 기계 (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식품을 파쇄, 절단, 혼합하거나 면을 뽑기 위함	회전날 사이 끼임 또는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확인 및 개선 이행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위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 등 개선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은 사업장마다 반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되,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또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점검 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필요한 조치'는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위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 이행점검 체크리스트(안)

부서	유해위험요인	점검결과		조치내역	
		내용	점검일	조치내용	조치일자

④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②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의 하나로 명시한 것임

- 종래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 절감 등의 명목으로 삭감하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 이에 시행령 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은 사업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한 것임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챙기도록 하여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

-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 확인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제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개선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 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

-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내용을 구성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함
- 특히,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의미함

【예시】 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146조 제3항)

- ② 스쿠버 잠수작업 시 2명이 1조를 이루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것(안전보건규칙 제545조 제1항)
- ③ 생활폐기물 운반 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6조의3 제2항 제3호 나목)
- ④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등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기준’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시행령 제4조제 4항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편성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로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로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즉,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특히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될 것은 아니고,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함

- 특히 인력뿐만 아니라 사업장 및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과 장비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맞게 안전조치 및 방호장치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3호에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은 아니어도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함
 -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한 예산을 포함함

▶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으로
 -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 이행점검 체크리스트(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 (2021. 2.)

연번	분류항목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5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6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7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8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9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통계청 기준에 따른 분류

(안전보건예산 규모 및 세부 항목별 비중에 대한 통계표상 분류기준)

연번	분류항목
1	안전보건인력의 유지비
2	안전보건 조직운영비
3	안전보건 활동비
4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
5	교육비
6	건강진단, 건강관리비
7	작업환경측정비
8	기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

항목	예산	집행내역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참고] 안전보건 예산 분류 사례

사례 1		
연번	대분류	내역
1	시설/설비비	고위험 설비 방호장치, 안전설비 추가, 설비손상 점검 및 교체
2	운영비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용품, 의약품, 포상, 캠페인 지원, 안전부서(인원확충 포함) 및 외주(방재센터 등) 인건비
3	시스템장비비	EHS시스템 고도화, 상황전파시스템, 밀폐공간 모니터링 장비 등
4	컨설팅/진단비	안전보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공정안전관리 진단
5	교육훈련비	사외교육(안전리더십, 공정안전, 안전문화 등)

사례 2		
연번	구분	내역
1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2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① 안전사업비 ② 안전관리비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4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5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6	안전 R&D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7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예방·정비 사업관리
8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9	기타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②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 제3호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 소장, 공장장 등을 말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착용 등 점검, 작업 전 안전미팅 진행 등 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5조)
 - ※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사업장 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도 수행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업무 수행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와 관리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평가 시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함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7.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산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달라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 ①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고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없으며, ③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지만 ①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②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2천명 당 1명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야 함
 - * 산업보건의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1호) 제2조(담당 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정해진 인원 '이상'으로 배치하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위반은 아님
 - 다만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 정부의 증원 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으로 정해진 수를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등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추가 배치를 결정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를 것

-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배치 의무를 면제하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겸직이 가능한 경우

-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건설업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안전관리자에 한함)에는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가능
-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참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1.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2.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로 하여야 함

[별표 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세부업종
광업	석회석(백운석, 대리석포함)광업
	금속광업
	쇄석채취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제조업	섬유판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대분류	세부업종
제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지류가공제품제조업
건설업	건축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
운수·창고 및 통신업	소형화물운수업
	퀵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기타의 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참고] 기업규제완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의 완화

구분	주요 내용
기업의 자율고용	산업보건의 채용의무 완화(기업규모, 유사자격을 가진 자의 채용 등 조건 없음)
공동채용	동일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은 300명 이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음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p>(1)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하나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구분	주요 내용
	<p>(2)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	<p>아래 제시된 자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자의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 관리자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p>(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채용 의무가 있는 아래 제시된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구분	주요 내용
	<p>(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 등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제시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div>
<p>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p>	<p>(3) 제시된 안전관리자 중 1명만 채용해도 채용된 자에게 아래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면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채용한 것으로 간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div>

⑦ 종사자 의견 청취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정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정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한 것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취합하는 등 의견 제시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정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 *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업체의 기계·기구, 장비 등의 구입,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의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③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임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를 말함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동일함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시행령 제34조 별표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⑧ 작업중지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함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매뉴얼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특히 사업주(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도급인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
 -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소속된 수급인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절차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119 등 긴급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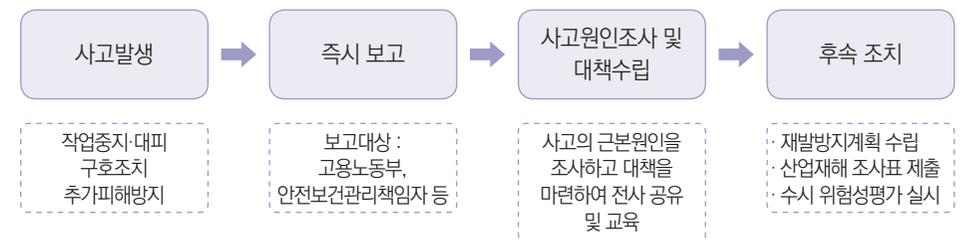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
- 아울러 작업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함

[예시] 비상대응 매뉴얼 구성(예)

구분	행동 및 조치절차	업무수행
중대산업재해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 최초 발견자는 휴대폰, 무전기, 유선 이용해서 발생장소 및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부서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 경우 119 등에 즉시 신고한다. 	최초 발견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혈장비를 이용하여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관리자 (작업자)
사고현장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 대피 등 위험원을 보호 조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관리감독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는 즉시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하여 환자를 이송한다. 	관리감독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인 경우 관계기관 사고발생 보고(고용노동부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관리감독자

[참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⑨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도급인 자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험작업이 많은 수급인의 경우에는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수급인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은 쉽지 않음
 - 이를 고려하여, 수급인 선정 시 기술, 가격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을 낙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역량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평가기준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 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 평가기준과 절차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마련하되,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등이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보건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점에 주목하여
 - 사업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들의 협의 등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해당 도급 등을 준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기간과 비용을 책정하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작업 수행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금액이며, 도급인이 도급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님

(3)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 기간을 의미함
- 특히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정하여서는 안 되며,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과도하게 짧은 기간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도 기준에 포함하여야 함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에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참고]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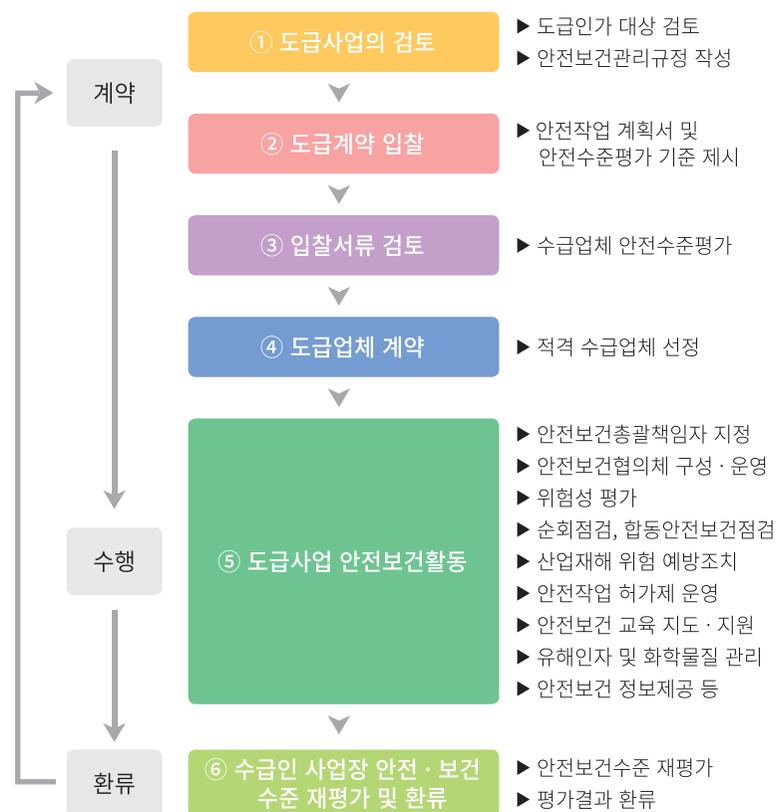
(출처 : 고용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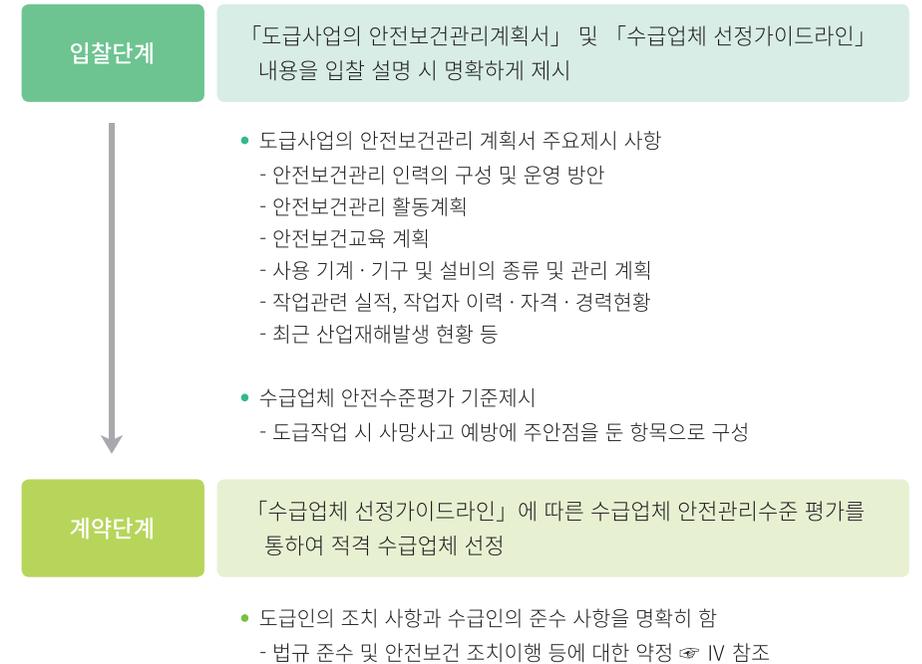
-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상황을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2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안전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 도급인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준평가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평가방식을 고려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 부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구비
- 도급작업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구조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10), 위험물질 및 설비(5),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3 선정기준 및 환류

평가결과 적용방법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의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참고]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출처 : 고용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 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사례 : 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하청업체별 안전보건환경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환경경영체계/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 (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 부여

-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
- ➔ 수급업체의 안전수준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원청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I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장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3	1

- ① 우수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하청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② 보통: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하청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 ① 우수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하청의 이행계획에는 원청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② 보통: 원청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구조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 ② 보통: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하청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① 우수
 - 원청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작업개시전임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작업에서 자체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거나,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확인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배치가 없는 경우 작업중지 운영방안이 있는 경우
- ② 보통: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③ 미흡: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하청업체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5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원청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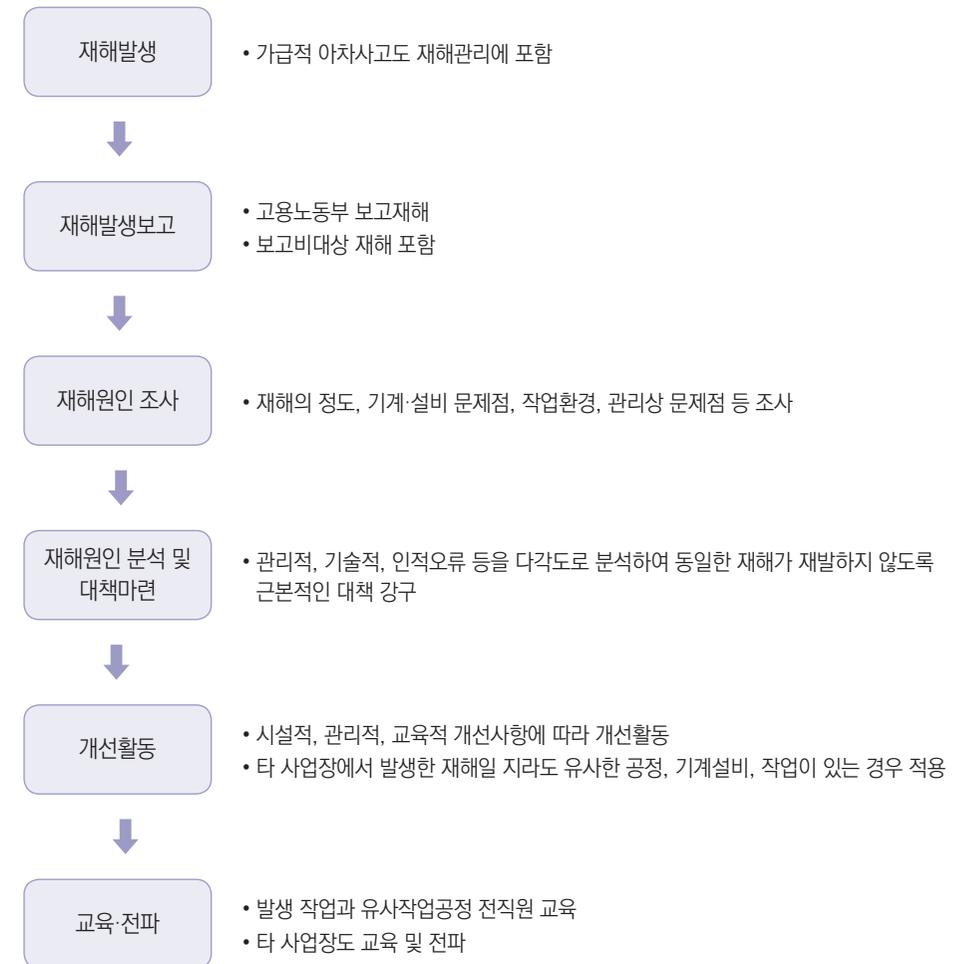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을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 받아야 하며,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함

▶ '재해'의 해석 :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 이때,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 하인리히 법칙(1:29:300의 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지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조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함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참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차



다.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명령 등의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의 명령을 한 사항에 대해 이행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 개선·시정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되어야 함
 -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행정기관 시정사항 이행관리 대장

점검일	행정관 서명	시정내용	시정 지시일	조치내용	조치일자	관공서 보고 일자	확인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관리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의무를 부과하였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2가지를 정하고 있음
- 이 의무는 해당 법령상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처분이 개별법령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 중대재해처벌법상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와 관련되는 법령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해당하며 업종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됨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시행령 제5조제1항)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며,
 -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참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법령명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

법령명	관련 조문
광산안전법	법을 제정 목적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법 제5조), 안전교육의 실시(법 제7조), 안전규정의 제정 및 준수(법 제11조) 등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 규율
원자력 안전법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법 제59조외2), 방사선장해방지조치(법 제91조) 등
항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을 제정 목적에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포함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법 제9조), 안전점검(법 제14조)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법 제15조), 교육·훈련(제20조) 및 건강검진(제21조) 등의 사항을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의 보호 조항(법 제14조의5)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정해진 보호장구의 지급, 운전자 포함 3명 1조의 작업 등의 안전기준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조항(법 제36조)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선원법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지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법 제82조), 의사의 승무(법 제84조) 등 규정을 포함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관련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등 준수사항(법 제14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등을 규정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적 의무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임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미 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이행 점검 및 필요한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요

- 경영책임자들은 우리회사의 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함
- 점검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직접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의무이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인력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등 자신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등임
 - 다만,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조직을 통해 실행될 수 있음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경영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채택하여야 하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적 의무이행 여부는 물론 성과와 문제점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아야 함
 -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이상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점검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대상이 상이함
- 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의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전문가나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방식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함
- 동 점검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 해당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점검의 지시를 하였으나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행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에게 귀속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 관리전문기관(법 제17조),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18조),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7조), 건설재해 예방전문 기관(법 제73조) 등이 있으며,
 - 점검의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정됨(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
 -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업무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의 위탁은 가능함

▶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점검과정을 통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므로,
 -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조차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의무가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과된 것임
- 위탁하여 점검하는 내용에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 * 안전보건 관련 정보, 교육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제3호와 제4호가 규정된 것임
 - 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점검 및 조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고용노동부 해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되므로 그 교육이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마땅히 준수되어야 함
 - * (예시)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 미 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미 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교육실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미 실시된 경우 의무주체가 수급인 등 제3자인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자신이 교육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직접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나. 지간의 경사 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IV. 사고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1.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 진행 예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적 재해예방 측면에 방점이 있다기 보다는 재해발생 시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평상시의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대재해 발생한 이후에 본사 등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 등 집중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사고가 발생할 시 수사기관은 본사에서 해당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예산·점검 체계의 구축 여부, 각 사업장들에서 이전에 유사 사고 발생시 조치한 실적, 노동부 지청 등에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 현재 개선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재해유형별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 사고와 결부할 수 있는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의 미비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하게 될 것임

결국 상기와 같은 세부적 항목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사업장 대응 프로세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상시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임

따라서 일정에 맞추어 계획을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3. 의무준수 인정을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의무준수 이행여부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사 및 각 사업장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시행령에서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비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법 제4조제1항제1호)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공문 ② 대표이사의 이사회보고 안건 및 결과서 ③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시달 공문 ④ 각 사업장의 게시 현황 증빙 ⑤ 경영목표 평가결과 보고서 ⑥ 홍보 실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활동(시행령 제4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현황표 ② 업무분장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계획서 (연도별) ② 이행상태 점검결과보고서 (반기 1회 이상) ③ 점검결과 조치 관련 문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시행령 제4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보건 예산 편성기준 ②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련 예산 ③ 집행(결산)결과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행령 제4조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배치·권한·책임 관련 내규 ② 업무수행 평가 기준 및 절차 문서 ③ 업무수행 평가결과 (반기 1회 이상)
각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정 전문인력 선임 신고서 ② 전문인력 직무교육 이수증 ③ 전문인력 직무, 업무형태별 배치기준 관련 문서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시행령 제4조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 결과문서 ② 개선의견 수렴 결과서류 (반기 1회 이상) ③ 협력업체 및 기타 종사자의 의견청취 방법 확인 ④ 종사자 의견 수렴조치 결과 내역서
급박한 위험 시 대응절차(시행령 제4조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사업장의 대응 매뉴얼 및 결재서류 ②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문서 ③ 대응훈련 등 점검 문서 (반기 1회 이상) ④ 개선방안 도출 및 검토 여부를 입증하는 문서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절차(시행령 제4조제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급시 수급업체 평가기준 ② 평가결과 보고서 점검 ③ 기준미달 수급사 조치 관련 문서

■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장별 재해보고절차 문서 ② 대책수립 및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계획 문서 ③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완료 문서
--

■ 행정기관 명령 이행관리(법 제4조제1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목록 및 문서 ② 이행결과 관련 문서(해당 행정기관에 제출 서류) ③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법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여부 반기1회 점검 및 결과보고(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검계획 수립문서 ② 점검결과 보고관련 문서 ③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상태확인 관련 문서
위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편성(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선 내역 및 조치결과 문서(해당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확인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조치(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보건교육 계획 문서 ②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기록) 철 ③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문서 ④ 교육이수 확인보고서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예산 확보 등 조치(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선 관련 문서(관련 예산 등 보완입증) (해당 시)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항목	구체적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관련 (제1호)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 ② 이사회 보고 여부 ③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④ 시행 여부 ⑤ 이행 달성정도 평가 시스템 구축 여부 ⑥ 노사 및 대외적 홍보 여부 등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활동	①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여부 ② 경영책임자 보좌 활동 ③ 각 사업장과 연계 및 관리활동 수준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①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점검계획수립 여부 ② 점검기준 마련(협력업체 참여 여부 등) ③ 점검결과보고 (반기 1회 이상) ④ 점검결과 개선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①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배치, 권한, 책임 ② 예산편성·집행 적정성 검토 ③ 업무수행 평가절차 마련 ④ 점검 및 평가조치 (반기 1회 이상)	
	각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① 법정 인력 선임사항 점검 ②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업무 수행체계 적정성검토 ③ 안전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 업무연계성 등 검토 ④ 업무형태에 따른 배치기준 (야간, 교대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①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과 연계적정성 ② 안전보건관련 예산시행기준 관리 ③ 위험성평가, 안전교육개선,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항목 포함여부 검토 ④ 집행실태 점검(예산별 용도 내 집행여부 점검) 및 보완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 상황보고 ② 개선의견 수렴 회의 (반기 1회 이상) ③ 협력업체 및 기타 종사자의 의견 청취방법 확인 ④ 종사자 의견의 반영 여부	
	급박한 위험 시 대응절차	① 각 사업장의 대응 매뉴얼 수립 여부 ② 교육훈련 실시여부 점검 ③ 대응훈련 등 점검 (반기 1회 이상) ④ 개선방안 도출 및 검토여부	
도급, 용역시 평가절차	① 각 사업장별 도급사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여부 점검 ② 운영상태 점검 ③ 기준미달 수급사 조치		

항목	구체적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관리(제2호)		① 재해보고절차 확립 ② 대책수립 및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실시계획 수립 ③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행정기관 명령 이행관리(제3호)		① 보고절차 규정화 여부 ② 보고 및 이행확인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점검 ③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4호)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반기1회 점검 및 결과보고	① 점검계획 수립 ② 점검활동 ③ 점검결과 조치 ④ 조치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	
	위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편성	① 점검결과 보고(본사) 및 개선대책회의 여부 ② 안전보건담당 인력/예산의 보와 필요성 검토 ③ 집행상태 점검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확인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조치	①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 이수관리 체계 점검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관리체계 점검 ③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확인(반기 1회 이상) ④ 관련 예산 보완여부 검토	

부록 2. 특별감독 및 형사처벌 사례

1.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사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지적사항과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A사 특별감독 사례

■ 본사 관련 지적사항

- ① (리더십)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 ② (안전관리 목표)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으며,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와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③ (인력·조직)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되어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본사 안전 전담팀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제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채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하다고 지적
- ④ (위험요인 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으며,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매우 부족(연 1.5~3시간)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⑤ (종사자 의견수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조치는 하고 있으나, 현장별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 ⑥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

■ 현장 관련 지적사항

- ①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평균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18년 95.2% → '19년 91.3% → '20년 89.0%)고 지적
- ②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함. 또한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

나. B사 특별감독 사례

■ 본사 관련 지적사항

- ① (리더십)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
- ② (안전관리 목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음
- ③ (인력·조직)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 모두 미흡
- ④ (안전보건 예산·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 급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 ⑤ (교육·역량 강화) 안전보건 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진행
- ⑥ (위험요인 관리체계)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 미흡
- ⑦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관계자, 근로자 소통체계 운영 미흡
- ⑧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최저가 낙찰제 운영 등

■ 현장 관련 지적사항

- ①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②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 확인
-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 적발됨

다. C사 특별감독 사례

■ 본사 관련 지적사항

- ① (사업장의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설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부재하고 전 구성원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저조
- ②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위험성평가나 안전점검에서 위험공정을 누락시키거나 개선 까지 이어지지 않아 동일 위험이 반복 발견되고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부재
- ③ (인력·조직) 정규직 비율이 낮고 타 직군의 전환배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움
- ④ (안전보건 예산·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예산 대부분을 안전보건 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하고 있고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이 미약

- ⑤ (종사자 의견 청취) 자체 안전보건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고 협력업체 종사자는 제외
- ⑥ (협력업체(수급인) 선정기준) 협력업체 등록·갱신 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안전분야 배점은 미미(총 100점 중 5점) / 저가 낙찰규정 적용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
- ⑦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교육(Tool Box Meeting)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위험공종 협력업체 대상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

■ 현장 관련 지적사항

- ① 관리체계 운영미흡, 및 교육 미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등 지적
- ② 추락·전도방지조치 미 실시 등 위험관리 미흡 및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라. 시사점

- ▶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 필요
- ▶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 표명,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 평가지표 마련 필요
- ▶ 전문성을 갖춘 자를 책임자로 선임하고, 매출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적정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자 증원 필요
- ▶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목적 사항에 부합한 예산 집행
- ▶ 안전보건 교육 예산 확대,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용 필요
- ▶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활동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 및 신뢰성 확보
- ▶ 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조치 필요
- ▶ 협력업체 선발 과정에서 공중에 따라 회사의 기술력, 안전성, 실행예산 내역 등을 평가하는 심의과정 추가 필요
- ▶ 안전 관련 경영방침, 전담부서의 위상, 협력업체 관리 등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감독, 개선 권고하였음
- ▶ 이사회 전문성 및 CEO의 안전보건경영 책임 역할을 강조
 -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 확보 : 고용노동부는 이사회 구성원은 교수, 세무법인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안전경영 측면의 검토에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안전보건경영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이사회 승인 추진 권고
 - 경영층의 안전보건 리더십 : 안전보건경영 담당 임원(경영지원본부장)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CEO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 필요성

- 안전담당부서의 독립성 : 안전지원실이 경영지원본부장 하부조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최고 경영자의 의지전달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의사결정 위축 우려 지적,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기술사업본부에 있음에 따른 역할 위축 우려 지적
- 안전관리자에 대한 낮은 정규직 비율 지적
- 보건분야 비전문가 배치 및 담당인력 부족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비 집행 지원 및 지도점검 필요성 지적
- 위험성 평가의 실질화 및 본부 모니터링 필요성 지적

- 발주처는 결로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피로 폐쇄 결정을 내려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특히 행정관청에 법령 위반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은 채 이런 결정을 내려 책임을 피할 수 없으나, 시공사·감리업체·건축사사무소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음

2.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가. 도급인 책임 사례(항만 컨테이너 부두 깔림 사망사고)

■ 사건 개요

- 항만 하역업무 등을 운영하는 D사는 A사에게 동식물 검역업무, 안전핀 제거 업무 등 작업에 필요한 인력공급에 관한 도급을 주어 A사가 피해자를 고용하였음. 피해자는 D사의 현장 관리자 요청으로 항만 카페리 항로를 운영중인 B선사의 소유인 개방형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FRC)의 양쪽 날개를 접고 안전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작업 하던 지게차가 날개를 접으면서 생긴 진동으로 피해자와 인접한 날개도 접히면서 피해자의 몸이 깔려 사망한 사건

■ 시사점

- ▶ D사의 경우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D사는 항만 시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D사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 D사는 해당 컨테이너의 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고, 컨테이너 불량에 대한 확인과 관리업무는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있는 B선사가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유무를 불문하고 항만 시설 전체에 대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은 D사에게 있으므로, D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음

나. 발주자 책임 사례(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망사고)

■ 사건 개요 및 결과

-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로 3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검찰은 하청 업체, 시공사, 감리, 발주자 소속 직원 등을 기소하였음
- 1심은 발주자(H사) 경영기획팀장(상무보)은 금고 8개월, 징역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시공사(K사) 본부장(현장소장)은 징역 3년 6개월, 시공사(K사) 부장은 금고 2년 3개월, 1차 수급인의 이사(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 감리회사의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 8개월 선고함

■ 시사점

- ▶ 발주자가 비상구 폐쇄 결정 등 시공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발주자(사업주)인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
- ▶ 회사가 향후 시공사에게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와 관련된 시설 부문의 경우 전문가, 행정관청 등 의견을 검토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고, 발주자가 어느 범위까지 공사 과정에 관여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계약에 반영해야 함

다. 직업성 질병 관련 사례

■ 사건 개요

- 직업병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여성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백혈병이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백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였음

■ 시사점

- ▶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원인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판정이 곤란하여 그동안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았음
-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제외되지 않고 있고, 시행령으로 정한 24개의 질병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형사책임의 여지가 있음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해 과로사(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고, 과로사, 직장내 따돌림,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음

부록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

1. 롯데이네오스화학(주)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근로자 참여 속에 365일 안전사업장을 목표로 순항 중

롯데이네오스화학(주)은 정밀 화학제품(초산, 초산비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89년 공장건설 단계부터 합작회사인 세계적인 석유기업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했고, 30여년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철학 아래 모든 임직원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용노동부의 ‘무재해 동탑’,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근로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이프티 컬처’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그 모든 바탕에는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 안전 최우선)’ 정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고도의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석유화학 공장은 사고 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을 정말 잘 챙겨야 합니다.”

롯데이네오스화학(주)은 다양한 안전설비와 고가의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갖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만 5천 평 규모의 기계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한다. 여기에 하나 더 공을 들이는 게 있다. 바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다.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문화입니다. ‘안전은 모든 일에 최우선이며, 현장에서 행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슬로건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세이프티 컬처(Safety Culture)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롯데이네오스화학(주)은 주기적으로 ‘안전 서약식’을 개최한다. 대표이사부터 신입 근로자까지 ‘안전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사무실과 공장 곳곳에 붙여놓는다. 서약서에는 안전준수 원칙과 슬로건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워크숍을 통해 근로자들이 의논하고 선정한 사항들이다.

2개월마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경영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석유화학 기업의 사고사례와 안전 환경 법규, 문제점 및 개선책 등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하고,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 소통과 참여로 안전과 신뢰 쌓는 ‘안전강조주간’

‘세이프티 컬처’를 위한 프로그램 중 으뜸은 직원들이 ‘SAW(Safety Awareness Week)’라고 부르는 ‘안전강조주간’이다. 2001년 영국 석유기업에서 압력용기 청 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상·하반기 1회씩, 일주일간 오직 ‘안전’만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안전활동을 하죠. 월요일 출근 길에 공장장과 팀장들이 정문에서 안전구호를 외치고 직원들에게 비타민제 등을 나눠주는 ‘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예시] 안전보건강조주간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 시 안전 캠페인 - 초산 탱크로리 차량점검 및 누출사고 대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시 비상대응 훈련(화재 or 케미칼 누출) - 안전환경 자체 감사결과 공유 및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례 안전워크숍 -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 금연 / 절주 홍보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준수서약서 서명식 - 초산 탱크로리 차량 주행 중 안전운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방사훈련 - 안전강조 주간 소식지 배포(사내 그룹웨어 프로그램인 MOIN에 뉴스레터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슬로건 게시(예: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 안전준수다짐 5분 사내방송(점심시간 전 11:55분~12:00, 팀별 1명 순번제) ✓ 안전표어 공모(수상작은 차기 정기보수 현수막 부착) ✓ 사고사례 전시회(국내·외 사고사례) 				

SAW는 모든 임직원이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양방향’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표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표어는 현장에 부착한다. 점심시간 직전 5분간 분임 대표자가 사내 방송에서 ‘안전’을 주제로 건의사항,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안전 워크숍’이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분임조들이 특정 사고사례를 정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임 원과 안전환경담당자가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SAW에서 발굴한 우수한 제안은 대부분 이행되어 참여자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우수 근로자는 인사고과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만큼은 회사가 반드시 해결해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근로자들에게 안전규칙 준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최근 기준에 사용하던 것보다 더 안전한 개인보호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다소 비싸지만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추진하기도 했어요. 설비 계단의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이나 공장 내 보행자통로 설치 같은 소소한 요청사항들도 즉시 처리하고 있죠.”

■ 쉽 없는 자율점검으로 365일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2013년에는 일일 설비점검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인 ‘365 카렌다’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직원 개개인이 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점검업무 사항과 결과를 등록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물론 다른 근로자의 점검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고 점검 및 관리업무 누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안전은 나와 내 가족, 내 동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안전에 관한 원칙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온 직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기업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사고가 없어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거래처에서도 회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없는 공장’,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더욱 가꿔 나가겠습니다.”

2. 삼성전자(주) DS부문

위험할 땐 'NO'라고 외치는 '작업중지권'으로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System LSI사업, 파운드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주)DS(Device solutions)는 작업 도중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작업중지에 따라 협력업체가 안게 될 손실을 보상해주는 조건도 명시해 놓았다. 협력업체 선정 평가 시 환경안전 역량 배점을 20%에서 50%로 높였고, 도급 기간의 안전관리 이행수준 배점도 기술 30%, 환경안전 70%로 조정해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 위험하면 STOP!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얼마 전, 삼성전자(주)DS 기흥사업장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는 배관분리 작업 중 하던 일을 멈추고 환경안전팀에 전화를 걸었다. 내용은 현장이 어두워 작업 조도가 확보되지 않으니 '작업중지권'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연락을 받은 작업중지권 운영부서와 환경안전팀, 협력업체 담당자는 즉시 현장에 나가 조도를 측정했다. 상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인해 현장의 조도가 '보통작업' 기준치인 150럭스(Lux)보다 다소 낮은 상태였다. 새로운 조명이 설치된 후 A씨는 작업을 재개했다.

최근 삼성전자(주)DS의 협력업체 근로자 중 A씨처럼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해 동안 245건에 그쳤던 건수가 2021년 상반기에 이미 1,200건을 넘어섰다.

"작업중지 독려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작업 시작 전에 위험요인을 찾고 담당 부서에 알려 안전을 확보한 뒤에 작업에 들어가는 협력업체가 늘었죠. 하지만 '작업 도중'에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처럼 늘지 않았어요."

전국의 삼성전자(주)DS 반도체 사업장에는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있다. DS 부문 핵심인 기흥사업장에는 유지·보수작업부터 단순납품까지 수많은 사람이 드나든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은 협력업체의 동참 없이는 불가능한 환경이다.

삼성전자(주)DS는 지난해 말부터 50여 차례 설명회를 열어 업종별 협력업체 관리자와 현장소장들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러자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대로, 소속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작업중지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고충들을 털어놓았다.

"작업중지권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물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작업이 중지될 때 납기일 지연이나 인건비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선불리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역시 작업중지로 인해 계약기간 동안 임금이 줄어 들 것을 걱정했죠."

3.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간간한 평가와 빠른 개선, '자체감사제도' 덕분에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자동차 타이어, 차선용 도로, 페인트, 기저귀용 접착제, 테이프/라벨, 글루건 등 각종 접착제 원료를 생산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20여 년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해왔다. 특히 2002년부터 '자체감사'와 '내부감사' 등의 점검체계를 꼼꼼하게 손질하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내부직원을 감사원으로 투입해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역량 있는 내부감사원 양성 및 교육이 우선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은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샷 틈 없는 간간한 감사제도가 있다.

"작은 사고 하나까지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업장의 안전수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감사원 선정과 양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감사원 선정기준은 무척 까다롭다. 관리자급 이상의 업무경력은 물론 전공, 자격, 자체 감사원 양성 교육 이수 등의 항목을 더한 점수가 내부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지위를 정(正)과 부(副)로 구분해, 부 감사원으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아야 정 감사원으로 승격된다. 현재 14명의 정·부 감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2021년 자체감사에서는 김천, 대산, 여수, 울산 사업장에서 총 5명의 감사원을 차출해 감사팀을 구성했다.

"한 사업장에 3일간 총 24일 동안 8개 사업장을 돌면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이를 '사업장 간 교차 감사(Cross Audit)'라고 해요. 생산설비의 증설이 발생했을 때는 공정기술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자체감사를 시행해서 더욱 객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꼼꼼한 자체감사로 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크

자체감사는 작업절차서 이행부터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지침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서류 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항목들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최근 3년간의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이후 전년도 지적사항들의 개선율을 체크하고, 평가점수가 하락한 항목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체감사 보고서는 모든 사업장에 공유되며 개선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해당 공장장이 담당자를 지정해 교육과 개선이 즉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체검사 진행과정

- ① 서류 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침사항 준수 여부 파악 최근 3년간의 결과 비교 분석
- ②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율 체크
- ③ 평가점수 하락 항목 중점관리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 ④ 모든 사업장과 자체감사 보고서 공유
- ⑤ 개선사항 발견 사업장은 공장장이 담당자 지정 후 즉시 개선

부록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일:2021. 1. 26.] 제16조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 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 점검 등의 실시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행인 겸 편집인	이 동 근
발행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소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전화	02-3270-7300
팩스	02-3270-7431
등록번호	1981. 7. 11. 제1-488호
분류번호	대외홍보자료[2021-안전보건본부-007]
인쇄일	2021년 12월 20일
발행일	2021년 12월 22일
인쇄	디자인영

〈비매품〉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_ 02-3270-7453 / 7329, 팩스 _ 02-3270-7444